2019년도 특정감사

특정감사 결과보고서

-인건비 현금인정과제 점검(사업비 2차)-

2019. 5.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감 사 실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 1

1. 감사배경 및 목적 ····· 1
2. 감사대상 및 범위 ····· 1
3. 감사 중점사항 ····· 1
4. 감사기간 및 인원 ····· 2
5. 점검대상 과제 ····· 2
6. 리스크 요소 ····· 2

Ⅱ. 감사결과 ····· 3

1. 총평 ····· 3
2. 지적사항 총괄 ····· 3
3. 지적사항 요약 ····· 3

Ⅲ.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 13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 13
2. 현지조치사항 일람표 ····· 15
3. 모범사례 일람표 ····· 15

첨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16

별첨. 점검대상 과제 세부 내역 ····· 69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우리원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연간 1조 5천억원에 달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관리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이나, 사업수행자의 부적절한 사업비 집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감사실에서는 과제수행자의 사업비 집행 현황과 우리원 담당자의 사업비 관리업무에 대한 점검을 통해 사업비의 부적정 집행을 방지하고,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비 관리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 감사대상 및 범위

이번 감사는 주요 리스크 요소를 반영하여 선정된 점검대상 102개 과제에 대한 서면검토를 실시하고, 이중 15개 과제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3. 감사 중점사항

이번 감사에서는 사업비의 부적정 집행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사업비의 정산과정이 적정하였는지 여부와 사업비의 부적정 집행 행위가 발견된 경우 동일한 유형의 부적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사항을 도출하는데 감사역량을 집중하였다.

4. 감사기간 및 인원

2019. 3. 26.부터 같은 해 4. 15.까지 감사인원 3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였고, 2019. 5. 10.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5. 점검대상 과제

인건비 현금인정 102개 과제(출연금 60,557백만원, 상세내역 별첨)

6. 리스크 요소

① (불성실) 중단 및 실패과제

② 인증기관 수행 과제 및 비영리기관이 수행중인 과제

③ 재무상태가 열악한 기업이 수행한 과제

④ 동일 기관이 다수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이 포함된 과제

⑤ 신용등급 저하 기업 또는 시사성 있는 기업이 수행하는 과제

⑥ RCMS에 따라 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과제

⑦ (참여연구원, 장비구입 등) 변경신청이 잦은 과제

⑧ 신규평가시 경쟁률이 1:1인 과제

⑨ 문제과제의 거래상대방이 수행중인 과제

⑩ 딥러닝(Deep-Learning)기법으로 이상징후가 탐색된 과제

⑪ 기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

Ⅱ. 감사결과

1. 총평

○ 사업계획서에 계상된 사업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를 지적하여 전파함으로써 재발방지를 도모하고

○ 수행기관에 사업비 집행에 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투명하고 올바른 연구개발을 수행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기대

2. 지적사항 총괄

(단위: 건, 백만원)

합계			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요구(금액)				주의 경고 (인원)	주의 (팀)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모범 사례 (인원)
총 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소계	추징	감액	기타							
15	-	818	-	-	15 (818)	15 (818)	-	-	-	-	-	-	-	-	-

3. 지적사항 요약

평가관리원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이하 ‘사업비요령’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지원과제의 사업비 관리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사업비 집행 부적정

사업비요령 제17조 제5항 및 [별표 4] ‘산업기술혁신사업 세목별 불인정 기준 예시’ [공통사항] 5.에 의하면, ‘수행기관이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는 불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는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에 사업비 38,800,000원을 집행한 바가 있으므로, 해당금액을 불인정하여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시정요구 1건).

2) ○○○사업의 사업비 집행 부적정

사업비요령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비는 과제수행과 관련 있는 용도로 사용해야 하나, ○○○는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업비 2,153,835원을 집행한 바가 있다. 이는 사업비요령 제17조 제5항에 따른 불인정 사용금액이므로 해당금액을 불인정하여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시정요구 1건).

3) ○○○사업의 사업비 집행 부적정

사업비요령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비는 과제수행과 관련 있는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사업비요령 제4조 제1항 및 [별표 2]에 의

하면,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은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는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업비 3,828,908원을 집행한 바가 있으며,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명목으로 연구환경유지비 875,000원을 집행한 바가 있다. 이는 사업비요령 제17조 제5항에 따른 불인정 사용금액이므로 해당금액을 불인정하여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시정요구 1건).

4) ○○○사업의 사업비 집행 부적정

사업비요령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비는 과제수행과 관련 있는 용도로 사용해야 하나, ○○○은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업비 11,090,000원을 집행한 바가 있다. 이는 사업비요령 제17조 제5항에 따른 불인정 사용금액이므로 해당금액을 불인정하여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시정요구 1건).

5) ○○○사업의 사업비 집행 부적정

사업비요령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비는 과제수행과 관련 있는 용도로 사용해야 하나, ○○○는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업비 4,812,881원을 집행한 바가 있다. 이는 사업비요령 제17조 제5항

에 따른 불인정 사용금액이므로 해당금액을 불인정하여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시정요구 1건).

6) ○○○사업의 사업비 집행 부적정

사업비요령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비는 과제수행과 관련 있는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사업비요령 제15조 제5항 및 [별표 2]에 의하면, 해당연도 수행기간 이후 이행이 완료된 건에 대한 사업비는 불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는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업비 2,004,864원을 집행한 바가 있으며, 이는 사업비요령 제17조제5항에 따른 불인정 사용금액이므로 해당금액을 불인정하여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또한, ○○○로부터 750명에 대한 음성 DB 수집 용역(용역대가 120,000,000원)을 제공받으면서 이 중 150명에 대한 음성 DB 수집 용역이 해당연도 수행기간 이후에 이행되어 해당연도 수행기간 동안 연구개발에 활용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용역대가 120,000,000원 중 24,000,000원은 사업비요령 제17조 제5항에 따른 불인정 사용금액이며, 해당금액을 불인정하여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시정요구 1건).

7) ○○○사업의 사업비 집행 부적정

사업비요령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비는 과제수행과 관련 있는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사업비요령 제4조 제1항 및 [별표 2]에 의하면, 직접비 중 인건비는 '해당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은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업비 276,402,400원을 집행한 바가 있으며,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인원에 대한 인건비 13,198,667원을 집행한 바가 있다. 이는 사업비요령 제17조 제5항에 따른 불인정 사용금액이므로 해당금액을 불인정하여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시정요구 1건).

8) ○○○사업의 사업비 집행 부적정

사업비요령 제4조 제1항 및 [별표 2]에 의하면,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은 수행중인 다른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비요령 제4조 제1항 및 [별표 2]에 의하면, 기술개발사업의 연구수당은 실집행 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 이하로 연구수당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는 참여율을 100% 초과하여 인건비 147,350,015원을 집행한 바가 있으며, 연구수당 지급액 중 7,756,003원은 실집행 인

건비의 20%를 초과하여 집행한 바가 있다. 이는 사업비요령 제17조 제5항에 따른 불인정 사용금액이므로 해당금액을 불인정하여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시정요구 1건).

9) ○○○사업의 사업비 집행 부적정

사업비요령 제4조 제1항 및 [별표 2]에 의하면,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은 수행중인 다른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직접비 중 인건비는 '해당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업비요령 제4조 제1항 및 [별표 2]에 의하면, 기술개발사업의 연구수당은 실집행 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 이하로 연구수당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는 참여율을 100% 초과하여 인건비 51,422,800원을 집행한 바가 있고, 퇴직한 연구원에게 인건비 1,600,000원을 집행한 바가 있으며, 연구수당 지급액 중 14,152,560원은 실집행 인건비의 20%를 초과하여 집행한 바가 있다. 이는 사업비요령 제17조 제5항에 따른 불인정 사용금액이므로 해당금액을 불인정하여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시정요구 1건).

10) ○○○사업의 사업비 집행 부적정

사업비요령 제4조 제1항 및 [별표 2]에 의하면,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은 수행중인 다른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직접비 중 인건비는 '해당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는 참여율을 100% 초과하여 인건비 4,213,333원을 집행한 바가 있으며, 퇴직한 연구원에게 인건비 1,600,000원을 집행한 바가 있다. 이는 사업비요령 제17조 제5항에 따른 불인정 사용금액이므로 해당금액을 불인정하여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시정요구 1건).

11) ○○○사업의 사업비 집행 부적정

사업비요령 제17조 제5항 및 [별표 4] '산업기술혁신사업 세목별 불인정 기준 예시' [공통사항] 5.에 의하면, '수행기관이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는 불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비요령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비는 과제수행과 관련 있는 용도로 해당 연도 수행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 제17조 제5항 및 [별표 4]에 의하면 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집행금액은 불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는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에 사업비

55,650,000원을 집행한 바가 있으며,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업비 96,220,000원을 집행한 바가 있다. 이는 사업비요령 제17조 제5항에 따른 불인정 사용금액이므로 해당금액을 불인정하여 환수조치하여야 한다(시정요구 1건).

12) ○○○사업의 사업비 집행 부적정

사업비요령 제17조 제5항 및 [별표 4] '산업기술혁신사업 세목별 불인정 기준 예시' [공통사항] 5.에 의하면, '수행기관이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는 불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비요령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비는 과제수행과 관련 있는 용도로 해당 연도 수행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 제17조 제5항 및 [별표 4]에 의하면 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집행금액은 불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는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에 사업비 83,000,000원을 집행한 바가 있으며,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업비 27,800,000원을 집행한 바가 있다. 이는 사업비요령 제17조 제5항에 따른 불인정 사용금액이므로 해당금액을 불인정하여 환수조치하여야 한다(시정요구 1건).

13) ○○○사업의 사업비 집행 부적정

사업비요령 제17조 제5항 및 [별표 4] ‘산업기술혁신사업 세목별 불인정 기준 예시’ [공통사항] 5.에 의하면, ‘수행기관이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는 불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비요령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비는 과제수행과 관련 있는 용도로 해당 연도 수행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 제17조 제5항 및 [별표 4]에 의하면 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집행금액은 불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는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에 사업비 34,200,000원을 집행한 바가 있으며,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업비 50,300,000원을 집행한 바가 있다. 이는 사업비요령 제17조 제5항에 따른 불인정 사용금액이므로 해당금액을 불인정하여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시정요구 1건).

14) ○○○사업의 사업비 집행 부적정

사업비요령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비는 과제수행과 관련 있는 용도로 사용해야 하나, ○○○는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업비 26,400,000원을 집행한 바가 있다. 이는 사업비요령 제17조 제5항에 따른 불인정 사용금액이므로 해당금액을 불인정하여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시정요구 1건).

15) ○○○사업의 사업비 집행 부적정

사업비요령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비는 과제수행과 관련 있는 용도로 사용해야 하나, ○○○는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업비 28,400,000원을 집행한 바가 있다. 이는 사업비요령 제17조 제5항에 따른 불인정 사용금액이므로 해당금액을 불인정하여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시정요구 1건).

Ⅲ.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순번	지적사항	조 치 요 구 사 항	조치 구분	처분 요구일	조치 기한일	처리부서
1	○○○사업의 사업비 집행 부적정	ㅇ ○○○○가 사업비 요령에 맞지 않게 사용한 사업비 집행액 38,800,000원의 정부출연금 지분 29,074,406원을 환수조치	시정요구	2019.5	2019.7 (2개월)	○○○팀
2	○○○사업의 사업비 집행 부적정	ㅇ ○○○○가 사업비 요령에 맞지 않게 사용한 사업비 집행액 2,153,835원의 정부출연금 지분 1,798,610원을 환수조치	시정요구	2019.5	2019.7 (2개월)	○○○팀
3	○○○사업의 사업비 집행 부적정	ㅇ ○○○○가 사업비 요령에 맞지 않게 사용한 사업비 집행액 4,703,908원의 정부출연금 지분 3,923,751원을 환수조치	시정요구	2019.5	2019.7 (2개월)	○○○팀
4	○○○사업의 사업비 집행 부적정	ㅇ ○○○○이 사업비 요령에 맞지 않게 사용한 사업비 집행액 11,090,000원의 정부출연금 지분 8,347,312원을 환수조치	시정요구	2019.5	2019.7 (2개월)	○○○팀
5	○○○사업의 사업비 집행 부적정	ㅇ ○○○○가 사업비 요령에 맞지 않게 사용한 사업비 집행액 4,812,881원의 정부출연금 지분 4,010,734원을 환수조치	시정요구	2019.5	2019.7 (2개월)	○○○팀
6	○○○사업의 사업비 집행 부적정	ㅇ ○○○○가 사업비 요령에 맞지 않게 사용한 사업비 집행액 26,004,864원의 정부출연금 지분 21,670,720원을 환수조치	시정요구	2019.5	2019.7 (2개월)	○○○팀

순번	지적사항	조 치 요 구 사 항	조치 구분	처분 요구일	조치 기한일	처리부서
7	○○○사업의 사업비 집행 부적정	ㅇ ○○○○이 사업비 요령에 맞지 않게 사용한 사업비 집행액 289,601,067원의 정부출연금 지분 241,997,086원을 환수조치	시정요구	2019.5	2019.7 (2개월)	○○○팀
8	○○○사업의 사업비 집행 부적정	ㅇ ○○○○가 사업비 요령에 맞지 않게 사용한 사업비 집행액 155,106,018원의 정부출연금 지분 132,964,027원을 환수조치	시정요구	2019.5	2019.7 (2개월)	○○○팀
9	○○○사업의 사업비 집행 부적정	ㅇ ○○○○가 사업비 요령에 맞지 않게 사용한 사업비 집행액 67,175,360원의 정부출연금 지분 50,562,099원을 환수조치	시정요구	2019.5	2019.7 (2개월)	○○○팀
10	○○○사업의 사업비 집행 부적정	ㅇ ○○○○가 사업비 요령에 맞지 않게 사용한 사업비 집행액 5,813,333원의 정부출연금 지분 5,813,333원을 환수조치	시정요구	2019.5	2019.7 (2개월)	○○○팀
11	○○○사업의 사업비 집행 부적정	ㅇ ○○○○가 사업비 요령에 맞지 않게 사용한 사업비 집행액 151,870,000원의 정부출연금 지분 114,784,894원을 환수조치	시정요구	2019.5	2019.7 (2개월)	○○○팀
12	○○○사업의 사업비 집행 부적정	ㅇ ○○○○가 사업비 요령에 맞지 않게 사용한 사업비 집행액 110,800,000원의 정부출연금 지분 83,743,300원을 환수조치	시정요구	2019.5	2019.7 (2개월)	○○○팀
13	○○○사업의 사업비 집행 부적정	ㅇ ○○○○가 사업비 요령에 맞지 않게 사용한 사업비 집행액 84,500,000원의 정부출연금 지분 70,590,469원을 환수조치	시정요구	2019.5	2019.7 (2개월)	○○○팀

순번	지적사항	조 치 요 구 사 항	조치 구분	처분 요구일	조치 기한일	처리부서
14	○○○사업의 사업비 집행 부적정	ㅇ ○○○가 사업비 요령에 맞지 않게 사용한 사업비 집행액 26,400,000원의 정부출연금 지분 23,290,655원을 환수조치	시정요구	2019.5	2019.7 (2개월)	○○○팀
15	○○○사업의 사업비 집행 부적정	ㅇ ○○○가 사업비 요령에 맞지 않게 사용한 사업비 집행액 28,400,000원의 정부출연금 지분 25,053,345원을 환수조치	시정요구	2019.5	2019.7 (2개월)	○○○팀

2. 현지조치사항 일람표

“해당사항 없음”

3. 모범사례 일람표

“해당사항 없음”

첨부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첨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일련번호	1	감사자	○○○	공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29,074,406원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단 (○○○팀)	처분요구일	2019.5.	회신 기한일	2019.7.

시정요구

제　　목　○○○사업의 사업비 집행 부적정

소 관 부 서　○○○팀

조 치 부 서　○○○팀

내　　용

1. 업무 개요

평가관리원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에 따라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사업의 평가 및 관리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이하 '사업비요령'이라 한다)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이하 '평가관리지침'이라 한다.)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한편, ‘○○○사업’의 평가 및 관리는 ○○○팀에서 담당하고 있다.

2. ○○○사업의 사업비 집행 부적정

가. 관련 법령 및 판단기준

사업비요령 제17조 제5항 및 [별표 4] ‘산업기술혁신사업 세목별 불인정 기준 예시’ [공통사항] 5.에 의하면, ‘수행기관이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는 불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평가관리원은 ‘○○○사업’인 ‘○○○ 개발(개발기간 : 2017.4.1 ~ 2018.3.31., 정부출연금 : 142백만원)’의 전담기관이며, 주관기관인 ○○○(주관기관 정부출연금 : 142백만원)은 전담기관과 체결한 협약서와 공통운영요령 및 사업비요령상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는 아래와 같이 상기과제의 1차년도에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에 사업비를 집행한 바가 있다.

[표 1]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에 집행한 사업비 내역

(단위 : 원)

사업연도	사용일자	거래처	내역	금액	비고
1차년도	2017-12-22	○○○	상수도유수모형시제품제작	8,600,000	
	2017-07-27		gps등	2,500,000	
	2017-07-27		센서류, 부속자재 등	2,400,000	
	2017-07-27		리튬전지외	1,500,000	
	2017-06-26		LoRa, 케이스3D프린팅	9,600,000	
	2017-06-26		재료비(plc, test보드)	3,200,000	
	2017-06-20		RF, 안테나	4,500,000	
	2017-06-19		lcd주문제작	1,000,000	
	2017-06-16		driver제작 4종	5,500,000	
합계				38,800,000	

관계부서 의견

해당과제의 관리부서(○○○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해당 집행내역을 불인정, 환수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단장(○○○팀장)은

○○○가 사업비 요령에 맞지 않게 사용한 사업비 집행액 38,800,000원의 정부출연금 지분[1] 29,074,406원을 환수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1)

(단위 : 원)

구분	정부출연금	민간현금	정부출연금 비율(%)	부적정 집행액	환수대상액
1차년도	142,000,000	47,500,000	74.93%	38,800,000	29,074,406

일련번호	2	감사자	○○○	공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1,798,610원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단 (○○○팀)	처분요구일	2019.5.	회신 기한일	2019.7.

시정요구

제　　목　○○○사업의 사업비 집행 부적정

소 관 부 서　○○○팀

조 치 부 서　○○○팀

내　　용

1. 업무 개요

평가관리원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에 따라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사업의 평가 및 관리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이하 '사업비요령'이라 한다)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이하 '평가관리지침'이라 한다.)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한편, ‘○○○사업’의 평가 및 관리는 ○○○팀에서 담당하고 있다.

2. ○○○사업의 사업비 집행 부적정

가. 관련 법령 및 판단기준

사업비요령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비는 과제수행과 관련 있는 용도로 해당 연도 수행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 제17조 제5항 및 [별표 4]에 의하면 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집행금액은 불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평가관리원은 ‘○○○사업’인 ‘○○○ 개발(개발기간 : 2018.5.1 ~ 2019.12.31., 정부출연금 : 1,320백만원)’의 전담기관이며, 참여기관인 ○○○(참여기관 정부출연금 : 170백만원)은 전담기관과 체결한 협약서와 공통운영요령 및 사업비요령상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는 아래와 같이 상기과제의 1차년도에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업비를 집행한 바가 있다.

[표 1]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용도로 집행한 사업비 내역

(단위 : 원)

사업연도	사용일자	거래처	내역	집행금액	불인정금액
1차년도	2018-06-18	○○○	토너 등	1,772,727	886,363
	2018-07-12	○○○		511,000	255,500
	2018-08-03	○○○		726,727	363,363
	2018-08-31			453,636	226,818
	2018-10-29			507,400	253,700
	2018-12-18			336,182	168,091
합계				4,307,672	2,153,835

관계부서 의견

해당과제의 관리부서(○○○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해당 집행내역을 불인정, 환수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단장(○○○팀장)은

○○○가 사업비 요령에 맞지 않게 사용한 사업비 집행액 2,153,835원의 정부출연금 지분[2] 1,798,610원을 환수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2)

(단위 : 원)

구분	정부출연금	민간현금	정부출연금 비율(%)	부적정 집행액	환수대상액
1차년도	80,000,000	15,800,000	83.51%	2,153,835	1,798,610

일련번호	3	감사자	○○○	공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3,923,751원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단 (○○○팀)	처분요구일	2019.5.	회신 기한일	2019.7.

시정요구

제　　목　○○○사업의 사업비 집행 부적정

소 관 부 서　○○○팀

조 치 부 서　○○○팀

내　　용

1. 업무 개요

평가관리원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에 따라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사업의 평가 및 관리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이하 '사업비요령'이라 한다)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이하 '평가관리지침'이라 한다.)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한편, ‘○○○사업’의 평가 및 관리는 ○○○팀에서 담당하고 있다.

2. ○○○사업의 사업비 집행 부적정

가. 관련 법령 및 판단기준

사업비요령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비는 과제수행과 관련 있는 용도로 해당 연도 수행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 제17조 제5항 및 [별표 4]에 의하면 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집행금액은 불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업비요령 제4조 제1항 및 [별표 2]에 의하면,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은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7조 제5항 및 [별표 4]에 의하면,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유지비용 중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품목 구입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은 불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평가관리원은 ‘○○○사업’인 ‘○○○ 개발(개발기간 : 2018.4.1 ~ 2019.12.31., 정부출연금 : 2,391백만원)’의 전담기관이며, 참여기관인 ○○○(참여기관 정부출연금 : 248백만원)은 전담기관과 체결한 협약서

와 공통운영요령 및 사업비요령상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는 아래와 같이 상기과제의 1차년도에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업비를 집행한 바가 있다.

[표 1]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용도로 집행한 사업비 내역

(단위 : 원)

사업연도	사용일자	거래처	내역	집행금액	불인정금액
1차년도	2018-06-15	○○○	토너 등	1,772,727	1,772,727
	2018-08-31			562,545	562,545
	2018-10-29			900,000	900,000
	2018-12-18			416,364	416,364
	2018-12-28			354,545	177,272
합계				4,006,181	3,828,908

또한, ○○○는 상기과제의 1차년도인 2018년 6월 25일에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명목으로 연구환경유지비 875,000원을 집행한 바가 있다.

관계부서 의견

해당과제의 관리부서(○○○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해당 집행내역을 불인정, 환수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단장(○○○팀장)은

○○○가 사업비 요령에 맞지 않게 사용한 사업비 집행액 4,703,908원의 정부출연금 지분[3] 3,923,751원을 환수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3) (단위 : 원)

구분	정부출연금	민간현금	정부출연금 비율(%)	부적정 집행액	환수대상액
1차년도	99,100,000	19,704,000	83.41%	4,703,908	3,923,751

일련번호	4	감사자	○○○	공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8,347,312원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단 (○○○팀)	처분요구일	2019.5.	회신 기한일	2019.7.

시정요구

제　　목　○○○사업의 사업비 집행 부적정

소 관 부 서　○○○팀

조 치 부 서　○○○팀

내　　용

1. 업무 개요

평가관리원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에 따라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사업의 평가 및 관리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이하 '사업비요령'이라 한다)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이하 '평가관리지침'이라 한다.)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한편, ‘○○○사업’의 평가 및 관리는 ○○○팀에서 담당하고 있다.

2. ○○○사업의 사업비 집행 부적정

가. 관련 법령 및 판단기준

사업비요령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비는 과제수행과 관련 있는 용도로 해당 연도 수행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 제17조 제5항 및 [별표 4]에 의하면 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집행금액은 불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평가관리원은 ‘○○○사업’인 ‘○○○ 개발(개발기간 : 2018.4.1 ~ 2019.12.31., 정부출연금 : 800백만원)’의 전담기관이며, 참여기관인 ○○○(참여기관 정부출연금 : 360백만원)은 전담기관과 체결한 협약서와 공통운영요령 및 사업비요령상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은 아래와 같이 상기과제의 1차년도에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업비를 집행한 바가 있다.

[표 1]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용도로 집행한 사업비 내역

(단위 : 원)

사업연도	사용일자	거래처	내역	집행금액	비고
1차년도	2018-12-17	○○○	토너 등	2,390,000	
	2018-11-30			2,100,000	
	2018-10-31			2,100,000	
	2018-09-28			1,500,000	
	2018-08-31			1,500,000	
	2018-07-31			1,500,000	
합계				11,090,000	

관계부서 의견

해당과제의 관리부서(○○○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해당 집행내역을 불인정, 환수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단장(○○○팀장)은

○○○이 사업비 요령에 맞지 않게 사용한 사업비 집행액 11,090,000원의 정부출연금 지분[4] 8,347,312원을 환수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4)

(단위 : 원)

구분	정부출연금	민간현금	정부출연금 비율(%)	부적정 집행액	환수대상액
1차년도	157,500,000	51,750,000	75.27%	11,090,000	8,347,312

일련번호	5	감사자	○○○	공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4,010,734원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단 (○○○팀)	처분요구일	2019.5.	회신 기한일	2019.7.

시정요구

제　　목　○○○사업의 사업비 집행 부적정

소 관 부 서　○○○팀

조 치 부 서　○○○팀

내　　용

1. 업무 개요

평가관리원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에 따라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사업의 평가 및 관리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이하 '사업비요령'이라 한다)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이하 '평가관리지침'이라 한다.)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한편, ‘○○○사업’의 평가 및 관리는 ○○○팀에서 담당하고 있다.

2. ○○○사업의 사업비 집행 부적정

가. 관련 법령 및 판단기준

사업비요령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비는 과제수행과 관련 있는 용도로 해당 연도 수행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 제17조 제5항 및 [별표 4]에 의하면 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집행금액은 불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평가관리원은 ‘○○○사업’인 ‘○○○ 개발(개발기간 : 2017.4.1 ~ 2019.12.31., 정부출연금 : 8,100백만원)’의 전담기관이며, 참여기관인 ○○○(참여기관 정부출연금 : 950백만원)은 전담기관과 체결한 협약서와 공통운영요령 및 사업비요령상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는 아래와 같이 상기과제의 1차년도와 2차년도에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업비를 집행한 바가 있다.

[표 1]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용도로 집행한 사업비 내역

(단위 : 원)

연차	사용일자	거래처	내역	집행금액	실사용자
1	2018-12-17	○○○	PC 및 모니터 2대	1,957,600	非참여연구원
2	2018-11-30	○○○	노트북	2,063,636	非참여연구원
	2018-10-31	○○○	개발용 PC	791,645	非참여연구원
합계				4,812,881	

관계부서 의견

해당과제의 관리부서(○○○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해당 집행내역을 불인정, 환수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가단장(○○○팀장)은

○○○가 사업비 요령에 맞지 않게 사용한 사업비 집행액 4,812,881원의 정부출연금 지분[5] 4,010,734원을 환수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5) (단위 : 원)

구분	정부출연금	민간현금	정부출연금 비율(%)	부적정 집행액	환수대상액
1차년도	250,000,000	50,000,000	83.33%	1,957,600	1,631,333
2차년도	287,500,000	57,500,000	83.33%	2,855,281	2,379,401
합계				4,812,881	4,010,734

일련번호	6	감사자	○○○	공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21,670,720원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단 (○○○팀)	처분요구일	2019.5.	회신 기한일	2019.7.

시정요구

제　　목　○○○사업의 사업비 집행 부적정

소 관 부 서　○○○팀

조 치 부 서　○○○팀

내　　용

1. 업무 개요

평가관리원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에 따라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사업의 평가 및 관리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이하 '사업비요령'이라 한다)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이하 '평가관리지침'이라 한다.)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한편, ‘○○○사업’의 평가 및 관리는 ○○○팀에서 담당하고 있다.

2. ○○○사업의 사업비 집행 부적정

가. 관련 법령 및 판단기준

사업비요령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비는 과제수행과 관련 있는 용도로 해당 연도 수행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 제17조 제5항 및 [별표 4]에 의하면 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집행금액은 불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업비요령 제15조 제5항 및 [별표 2]에 의하면, 해당연도 수행기간 이후 이행이 완료된 건에 대한 사업비는 불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평가관리원은 ‘○○○사업’인 ‘○○○ 개발(개발기간 : 2017.9.1 ~ 2019.12.31., 정부출연금 : 3,391백만원)’의 전담기관이며, 주관기관인 ○○○(주관기관 정부출연금 : 1,718백만원)은 전담기관과 체결한 협약서와 공통운영요령 및 사업비요령상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는 아래와 같이 상기과제의 1차년도에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업비를 집행한 바가 있다.

[표 1]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용도로 집행한 사업비 내역

(단위 : 원)

연차	사용일자	거래처	내역	집행금액	실사용자
1	2018-01-18	○○○	현장개발용노트북	2,004,864	非참여연구원

한편, ○○○는 상기과제의 2차년도에 ○○○와 '차량용 컴패니언 차량환경 음성 DB 수집 과제 2차년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비 120,000,000원을 집행한 바가 있다.

그러나, ○○○는 음성 DB 수집 대상인원 750명 중 150명에 대해 해당연도 수행기간 이후인 2019년 2월에 용역의 이행을 완료하였다. 따라서, 해당연도 수행기간 이후에 용역이 이행되어 해당연도 수행기간 동안 연구개발에 활용되지 못한 150명에 대한 사업비 24,000,000원[6]은 불인정 대상으로 판단된다.

관계부서 의견

해당과제의 관리부서(○○○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해당 집행내역을 불인정, 환수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6) 120,000,000원*150명/750명으로 계산

조치할 사항

○○○단장(○○○팀장)은

○○○가 사업비 요령에 맞지 않게 사용한 사업비 집행액 26,004,864원의 정부출연금 지분[7] 21,670,720원을 환수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7) (단위 : 원)

구분	정부출연금	민간현금	정부출연금 비율(%)	부적정 집행액	환수대상액
1차년도	432,000,000	86,400,000	83.33%	2,004,864	1,670,720
2차년도	600,000,000	120,000,000	83.33%	24,000,000	20,000,000
합계				26,004,864	21,670,720

일련번호	7	감사자	○○○	공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241,997,086원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단 (○○○팀)	처분요구일	2019.5.	회신 기한일	2019.7.

시정요구

제　　목　○○○사업의 사업비 집행 부적정

소 관 부 서　○○○팀

조 치 부 서　○○○팀

내　　용

1. 업무 개요

평가관리원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에 따라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사업의 평가 및 관리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이하 '사업비요령'이라 한다)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이하 '평가관리지침'이라 한다.)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한편, ‘○○○사업’의 평가 및 관리는 ○○○팀에서 담당하고 있다.

2. ○○○사업의 사업비 집행 부적정

가. 관련 법령 및 판단기준

사업비요령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비는 과제수행과 관련 있는 용도로 해당 연도 수행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 제17조 제5항 및 [별표 4]에 의하면 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집행금액은 불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업비요령 제4조 제1항 및 [별표 2]에 의하면, 직접비 중 인건비는 ‘해당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평가관리원은 ‘○○○사업’인 ‘○○○ 개발(개발기간 : 2017.4.1 ~ 2018.12.31., 정부출연금 : 3,170백만원)’의 전담기관이며, 주관기관인 ○○○(주관기관 정부출연금 : 1,075백만원)은 전담기관과 체결한 협약서와 공통운영요령 및 사업비요령상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은 아래와 같이 상기과제의 1차년도와 2차년도에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업비를 집행한 바가 있다.

[표 1]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용도로 집행한 사업비 내역

(단위 : 원)

연차	사용일자	거래처	내역	집행금액	비고
1	2017-11-29	○○○	센서	10,200,000	
	2017-12-20	○○○	미니 PC 파워 메모리 케이스	2,500,000	
	2017-12-21	○○○	Controller Board	2,800,000	
	2017-12-22	○○○	Main Frame	18,000,000	
	2017-12-27	○○○	Cover	10,450,000	
		○○○	Sensor Bracket	1,196,000	
			Stoper Bracket	730,000	
		○○○	Battery Cover	16,400,000	
			Bumper Cover	8,100,000	
	2017-12-28	○○○	Light Curtain	4,430,000	
		○○○	Wheel Motor	29,847,000	
				25,700,000	
1차년도 소계				130,353,000	
2	2018-07-25	○○○	개방형 모바일 플랫폼 재료비	35,000,000	
	2018-09-03	○○○	개방형 모바일 플랫폼/구매품	30,773,000	
	2018-10-06	○○○	재료구입비	14,300,000	
	2018-10-07	○○○		13,200,000	
	2018-10-08	○○○		7,590,000	
	2018-10-10	○○○		22,660,000	
	2018-10-15	○○○		880,000	
		○○○	재료구입비(부분불인정)	1,050,000	
	2018-10-19	○○○	재료구입비	4,290,000	
	2018-10-22	○○○		7,920,000	
		○○○		3,711,400	
	2018-11-09	○○○		4,675,000	
2차년도 소계				146,049,400	
합계				276,402,400	

또한, ○○○은 아래와 같이 상기과제의 1차년도에 2차년도에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인원에 대해 인건비를 집행하였다.

[표 2]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인원에게 집행한 인건비 내역

(단위 : 원)

연차	구분	성명	금액	불인정사유	비고
1	현물	○○○	4,166,667	구매업무 수행기관 인건비	
2	현금	○○○	2,050,000	퇴직후 급여지급	
	현금	○○○	2,032,000	퇴직후 급여지급	
	현금	○○○	4,950,000	퇴직후 급여지급	
합계			13,198,667		

관계부서 의견

해당과제의 관리부서(○○○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해당 집행내역을 불인정, 환수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단장(○○○팀장)은

○○○이 사업비 요령에 맞지 않게 사용한 사업비 집행액 289,601,067원의 정부출연금 지분[8] 241,997,086원을 환수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8)

(단위 : 원)

구분	정부출연금	민간현금	정부출연금 비율(%)	부적정 집행액	환수대상액
1차년도(현금)	540,000,000	110,000,000	83.08%	130,353,000	108,293,262
1차년도(현물)			100.00%	4,166,667	4,166,667
2차년도(현금)	535,000,000	105,500,000	83.53%	155,081,400	129,537,157
합계				289,601,067	241,997,086

일련번호	8	감사자	○○○	공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132,964,027원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단 (○○○팀)	처분요구일	2019.5.	회신 기한일	2019.7.

시정요구

제　　목　○○○사업의 사업비 집행 부적정

소 관 부 서　○○○팀

조 치 부 서　○○○팀

내　　용

1. 업무 개요

평가관리원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에 따라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사업의 평가 및 관리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이하 '사업비요령'이라 한다)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이하 '평가관리지침'이라 한다.)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한편, ‘○○○사업’의 평가 및 관리는 ○○○팀에서 담당하고 있다.

2. ○○○사업의 사업비 집행 부적정

가. 관련 법령 및 판단기준

사업비요령 제4조 제1항 및 [별표 2]에 의하면,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은 수행중인 다른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제17조 제5항 및 [별표 4]에 의하면 실제 급여총액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불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업비요령 제4조 제1항 및 [별표 2]에 의하면, 기술개발사업의 연구수당은 실집행 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 이하로 연구수당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제17조 제5항 및 [별표 4]에 의하면, 인건비를 협약시 사업계획서 당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집행 인건비의 2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불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평가관리원은 ‘○○○사업’인 ‘○○○ 개발(개발기간 : 2017.12.1 ~ 2019.12.31., 정부출연금 : 950백만원)’의 전담기관이며, 참여기관인 ○

○○(참여기관 정부출연금 : 400백만원)은 전담기관과 체결한 협약서와 공통운영요령 및 사업비요령상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는 아래와 같이 상기과제의 1차년도와 2차년도에 참여율을 100% 초과하여 인건비를 집행한 바가 있다.

[표 1] 참여율 100%를 초과하여 집행한 인건비 내역

(단위 : 원)

사업연도	참여율 100% 초과 인건비		합계
	현금	현물	
1차년도	72,311,377	24,008,638	96,320,015
2차년도	51,030,000	-	51,030,000
합계	123,341,377	24,008,638	147,350,015

또한, ○○○가 인건비로 집행한 금액에서 참여율을 100%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을 차감한 실집행 인건비를 기준으로 연구수당 한도를 재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연구수당 한도초과에 따른 불인정 금액이 발생한다.

[표 2] 연구수당 한도초과 불인정액 내역

(단위 : 원)

연차	인건비 집행액			인건비 불인정	실집행 인건비	연구수당 집행액	연구수당 한도	한도초과
	현금	현물	합계					
1	90,240,000	30,600,000	120,840,000	96,320,015	24,519,985	12,660,000	4,903,997	7,756,003
2	89,820,000	30,300,000	120,120,000	51,030,000	69,090,000	12,280,000	13,818,000	-
합계	180,060,000	60,900,000	240,960,000	147,350,015	93,609,985	24,940,000	18,721,997	7,756,003

관계부서 의견

해당과제의 관리부서(○○○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해당 집행내역을 불인정, 환수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단장(○○○팀장)은

○○○가 사업비 요령에 맞지 않게 사용한 사업비 집행액 155,106,018원의 정부출연금 지분[9] 132,964,027원을 환수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9) (단위 : 원)

구분	정부출연금	민간현금	정부출연금 비율(%)	부적정 집행액	환수대상액
1차년도(현금)	100,000,000	20,400,000	83.06%	80,067,380	66,501,146
1차년도(현물)			100.00%	24,008,638	24,008,638
2차년도(현금)	100,000,000	20,200,000	83.19%	51,030,000	42,454,243
합계				155,106,018	132,964,027

일련번호	9	감사자	○○○	공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50,562,099원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단 (○○○팀)	처분요구일	2019.5.	회신 기한일	2019.7.

시정요구

제　　목　○○○사업의 사업비 집행 부적정

소 관 부 서　○○○팀

조 치 부 서　○○○팀

내　　용

1. 업무 개요

평가관리원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에 따라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사업의 평가 및 관리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이하 '사업비요령'이라 한다)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이하 '평가관리지침'이라 한다.)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한편, ‘○○○사업’의 평가 및 관리는 ○○○팀에서 담당하고 있다.

2. ○○○사업의 사업비 집행 부적정

가. 관련 법령 및 판단기준

사업비요령 제4조 제1항 및 [별표 2]에 의하면,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은 수행중인 다른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제17조 제5항 및 [별표 4]에 의하면 실제 급여총액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불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업비요령 제4조 제1항 및 [별표 2]에 의하면, 직접비 중 인건비는 ‘해당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업비요령 제4조 제1항 및 [별표 2]에 의하면, 기술개발사업의 연구수당은 실집행 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 이하로 연구수당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제17조 제5항 및 [별표 4]에 의하면, 인건비를 협약시 사업계획서 당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집행 인건비의 2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불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평가관리원은 ‘○○○사업’인 ‘○○○ 개발(개발기간 : 2018.4.1 ~ 2019.12.31., 정부출연금 : 800백만원)’의 전담기관이며, 주관기관인 ○○○(주관기관 정부출연금 : 440백만원)은 전담기관과 체결한 협약서와 공통운영요령 및 사업비요령상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는 아래와 같이 상기과제의 1차년도에 참여율을 100% 초과하여 인건비를 집행한 바가 있다.

[표 1] 참여율 100%를 초과하여 집행한 인건비 내역

(단위 : 원)

사업연도	참여율 100% 초과 인건비		합계
	현금	현물	
1차년도	31,963,600	19,459,200	51,422,800

또한, ○○○는 1차년도중 퇴직한 연구원에게 인건비 1,600,000원을 집행한 바가 있다.

한편, ○○○가 인건비로 집행한 금액에서 참여율을 100%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을 차감한 실집행 인건비를 기준으로 연구수당 한도를 재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연구수당 한도초과에 따른 불인정 금액이 발생한다.

[표 2] 연구수당 한도초과 불인정액 내역

(단위 : 원)

연차	인건비 집행액			인건비 불인정	실집행 인건비	연구수당 집행액	연구수당 한도	한도초과
	현금	현물	합계					
1	152,260,000	40,700,000	192,960,000	53,022,800	139,937,200	42,140,000	27,987,440	14,152,560

관계부서 의견

해당과제의 관리부서(○○○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해당 집행내역을 불인정, 환수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단장(○○○팀장)은

○○○가 사업비 요령에 맞지 않게 사용한 사업비 집행액 67,175,360원의 정부출연금 지분[10] 50,562,099원을 환수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10) (단위 : 원)

구분	정부출연금	민간현금	정부출연금 비율(%)	부적정 집행액	환수대상액
1차년도	192,500,000	63,250,000	75.27%	67,175,360	50,562,099

일련번호	10	감사자	○○○	공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5,813,333원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단 (○○○팀)	처분요구일	2019.5.	회신 기한일	2019.7.

시정요구

제　　목　○○○사업의 사업비 집행 부적정

소 관 부 서　○○○팀

조 치 부 서　○○○팀

내　　용

1. 업무 개요

평가관리원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에 따라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사업의 평가 및 관리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이하 '사업비요령'이라 한다)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이하 '평가관리지침'이라 한다.)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한편, ‘○○○사업’의 평가 및 관리는 ○○○팀에서 담당하고 있다.

2. ○○○사업의 사업비 집행 부적정

가. 관련 법령 및 판단기준

사업비요령 제4조 제1항 및 [별표 2]에 의하면,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은 수행중인 다른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제17조 제5항 및 [별표 4]에 의하면 실제 급여총액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불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업비요령 제4조 제1항 및 [별표 2]에 의하면, 직접비 중 인건비는 ‘해당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평가관리원은 ‘○○○사업’인 ‘○○○ 개발(개발기간 : 2018.7.1 ~ 2020.12.31., 정부출연금 : 1,500백만원)’의 전담기관이며, 주관기관인 ○○○(주관기관 정부출연금 : 814백만원)은 전담기관과 체결한 협약서와 공통운영요령 및 사업비요령상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는 아래와 같이 상기과제의 1차년도에 참여율을

100% 초과하여 인건비를 집행한 바가 있다.

[표 1] 참여율 100%를 초과하여 집행한 인건비 내역

(단위 : 원)

사업연도	참여율 100% 초과 인건비		합계
	현금	현물	
1차년도	4,213,333	-	4,213,333

또한, ○○○는 1차년도중 퇴직한 연구원에게 인건비 1,600,000원을 집행한 바가 있다.

관계부서 의견

해당과제의 관리부서(○○○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해당 집행내역을 불인정, 환수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단장(○○○팀장)은

○○○가 사업비 요령에 맞지 않게 사용한 사업비 집행액 5,813,333원의 정부출연금 지분[11] 5,813,333원을 환수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11) (단위 : 원)

구분	정부출연금	민간현금	정부출연금 비율(%)	부적정 집행액	환수대상액
1차년도	100,000,000	-	100.00%	5,813,333	5,813,333

일련번호	11	감사자	○○○	공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114,784,894원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단 (○○○팀)	처분요구일	2019.5.	회신 기한일	2019.7.

시정요구

제　　목　○○○사업의 사업비 집행 부적정

소 관 부 서　○○○팀

조 치 부 서　○○○팀

내　　용

1. 업무 개요

평가관리원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에 따라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사업의 평가 및 관리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이하 '사업비요령'이라 한다)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이하 '평가관리지침'이라 한다.)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한편, ‘○○○사업’의 평가 및 관리는 ○○○팀에서 담당하고 있다.

2. ○○○사업의 사업비 집행 부적정

가. 관련 법령 및 판단기준

사업비요령 제17조 제5항 및 [별표 4] ‘산업기술혁신사업 세목별 불인정 기준 예시’ [공통사항] 5.에 의하면, ‘수행기관이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는 불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업비요령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비는 과제수행과 관련 있는 용도로 해당 연도 수행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 제17조 제5항 및 [별표 4]에 의하면 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집행금액은 불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평가관리원은 ‘○○○사업’인 ‘○○○ 개발(개발기간 : 2016.10.1 ~ 2019.3.31., 정부출연금 : 1,300백만원)’의 전담기관이며, 주관기관인 ○○○(주관기관 정부출연금 : 700백만원)은 전담기관과 체결한 협약서와 공통운영요령 및 사업비요령상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는 아래와 같이 상기과제의 2단계 1차년도와 2차년

도에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에 사업비를 집행한 바가 있다.

[표 1]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에 집행한 사업비 내역

(단위 : 원)

사업연도	사용일자	거래처	내역	금액	비고
2단계 1차년도	2017-08-28	○○○	개선형체형분석발판구동드라이버	12,000,000	
	2017-09-20		측정용3D카메라제어모듈개선품	9,200,000	
	2017-10-23		체형분석용통합측정제어보드	11,000,000	
2단계 2차년도	2018-03-26		체형분석발판센서상호연동모듈	7,050,000	
	2018-06-05		체형분석발판통신보드(BLE)	8,400,000	
	2018-09-17		3D-depth 카메라 외	8,000,000	
합계				55,650,000	

또한, ○○○는 아래와 같이 상기과제의 2단계 1차년도와 2차년도에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업비를 집행한 바가 있다.

[표 2]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용도로 집행한 사업비 내역

(단위 : 원)

연차	사용일자	거래처	내역	집행금액	비고
2/1	2017-08-31	○○○	무선통신모듈	11,400,000	
	2017-10-26	○○○	체형분석발판테스트지그	16,500,000	
2단계 1차년도 합계				27,900,000	
2/2	2018-05-29	○○○	OS내장형측정용3D카메라개선품보드	3,200,000	
	2018-09-19	○○○	개선형 체형분석발판 센서 상호연동모듈	6,000,000	
	2018-09-27	○○○	개선형 영상처리모듈	11,200,000	
	2018-07-24	○○○	개선체형분석발판통신보드(BLE)	10,000,000	
	2018-06-11	○○○	데이터저장스토리지	3,000,000	
	2018-10-31	○○○	개선형통합컨트롤보드	13,800,000	
	2018-04-02	○○○	개선체형분석발판질량측정모듈	1,000,000	
	2018-06-20	○○○	고성능영상인코딩보드	10,000,000	
	2018-03-30	○○○	개선형체형분석발판회전부제어모듈	10,120,000	
2차년도 소계				68,320,000	
합계				96,220,000	

관계부서 의견

해당과제의 관리부서(○○○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해당 집행내역을 불인정, 환수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단장(○○○팀장)은

○○○가 사업비 요령에 맞지 않게 사용한 사업비 집행액 151,870,000원의 정부출연금 지분[12] 114,784,894원을 환수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12) (단위 : 원)

구분	정부출연금	민간현금	정부출연금 비율(%)	부적정 집행액	환수대상액
2단계 1차년도	276,000,000	89,172,000	75.58%	60,100,000	45,424,074
2단계 2차년도	320,000,000	103,386,000	75.58%	91,770,000	69,360,820
합계				151,870,000	114,784,894

일련번호	12	감사자	○○○	공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83,743,300원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단 (○○○팀)	처분요구일	2019.5.	회신 기한일	2019.7.

시정요구

제　　목　○○○사업의 사업비 집행 부적정

소 관 부 서　○○○팀

조 치 부 서　○○○팀

내　　용

1. 업무 개요

평가관리원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에 따라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사업의 평가 및 관리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이하 '사업비요령'이라 한다)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이하 '평가관리지침'이라 한다.)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한편, ‘○○○사업’의 평가 및 관리는 ○○○팀에서 담당하고 있다.

2. ○○○사업의 사업비 집행 부적정

가. 관련 법령 및 판단기준

사업비요령 제17조 제5항 및 [별표 4] ‘산업기술혁신사업 세목별 불인정 기준 예시’ [공통사항] 5.에 의하면, ‘수행기관이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는 불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업비요령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비는 과제수행과 관련 있는 용도로 해당 연도 수행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 제17조 제5항 및 [별표 4]에 의하면 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집행금액은 불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평가관리원은 ‘○○○사업’인 ‘○○○ 개발(개발기간 : 2016.12.1 ~ 2018.11.30., 정부출연금 : 1,400백만원)’의 전담기관이며, 주관기관인 ○○○(주관기관 정부출연금 : 660백만원)은 전담기관과 체결한 협약서와 공통운영요령 및 사업비요령상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는 아래와 같이 상기과제의 1차년도와 2차년도에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에 사업비를 집행한 바가 있다.

[표 1]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에 집행한 사업비 내역

(단위 : 원)

사업연도	사용일자	거래처	내역	금액	비고
1차년도	2017-02-23	○○○	경량형 클라우드 커넥터 무선통신 모듈	12,500,000	
	2017-03-27		멀티플랫폼캐리어보드	17,500,000	
	2017-07-03		개선형소형무선통신인터페이스모듈	15,000,000	
2차년도	2018-01-18		개선형멀티플랫폼캐리어보드	15,000,000	
	2018-03-27		x86클라우드서버	8,000,000	
	2018-04-30		멀티DAC보드	15,000,000	
합계				83,000,000	

또한, ○○○는 아래와 같이 상기과제의 1차년도와 2차년도에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업비를 집행한 바가 있다.

[표 2]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용도로 집행한 사업비 내역

(단위 : 원)

연차	사용일자	거래처	내역	집행금액	비고
2	2018-04-02	○○○	다기능형클라우드커넥터제어모듈	15,600,000	
	2018-09-27	○○○	다기능형 클라우드커넥터 무선/제어 통합모듈	12,200,000	
합계				27,800,000	

관계부서 의견

해당과제의 관리부서(○○○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해당 집행내역을 불인정, 환수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단장(○○○팀장)은

○○○가 사업비 요령에 맞지 않게 사용한 사업비 집행액 110,800,000원의 정부출연금 지분[13] 83,743,300원을 환수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13) (단위 : 원)

구분	정부출연금	민간현금	정부출연금 비율(%)	부적정 집행액	환수대상액
1차년도	330,000,000	106,620,000	75.58%	45,000,000	34,011,268
2차년도	330,000,000	106,620,000	75.58%	65,800,000	49,732,032
합계				110,800,000	83,743,300

일련번호	13	감사자	○○○	공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70,590,469원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단 (○○○팀)	처분요구일	2019.5.	회신 기한일	2019.7.

시정요구

제　　목　○○○사업의 사업비 집행 부적정

소 관 부 서　○○○팀

조 치 부 서　○○○팀

내　　용

1. 업무 개요

평가관리원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에 따라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사업의 평가 및 관리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이하 '사업비요령'이라 한다)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이하 '평가관리지침'이라 한다.)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한편, ‘○○○사업’의 평가 및 관리는 ○○○팀에서 담당하고 있다.

2. ○○○사업의 사업비 집행 부적정

가. 관련 법령 및 판단기준

사업비요령 제17조 제5항 및 [별표 4] ‘산업기술혁신사업 세목별 불인정 기준 예시’ [공통사항] 5.에 의하면, ‘수행기관이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는 불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업비요령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비는 과제수행과 관련 있는 용도로 해당 연도 수행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 제17조 제5항 및 [별표 4]에 의하면 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집행금액은 불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평가관리원은 ‘○○○사업’인 ‘○○○ 개발(개발기간 : 2017.10.1 ~ 2020.3.31., 정부출연금 : 880백만원)’의 전담기관이며, 주관기관인 ○○○(주관기관 정부출연금 : 397백만원)은 전담기관과 체결한 협약서와 공통운영요령 및 사업비요령상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는 아래와 같이 상기과제의 2단계 1차년도에 인적·

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에 사업비를 집행한 바가 있다.

[표 1]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에 집행한 사업비 내역

(단위 : 원)

사업연도	사용일자	거래처	내역	금액	비고
2단계 1차년도	2018-06-29	○○○	스마트방석 시작품 무선, 제어 통합 모듈	6,000,000	
	2018-06-29		인이어 디바이스 센서, 제어, 통신 통합 모듈	2,400,000	
	2018-08-31		모션인식카메라제어모듈	13,800,000	
	2018-08-31		영상데이터처리모듈	12,000,000	
합계				34,200,000	

또한, ○○○는 아래와 같이 상기과제의 2단계 1차년도와 2차년도에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업비를 집행한 바가 있다.

[표 2]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용도로 집행한 사업비 내역

(단위 : 원)

연차	사용일자	거래처	내역	집행금액	비고
2/1	2018-10-04	○○○	테스트용 지그 제작	2,500,000	
	2018-07-17	○○○	테스트베드용 방석 압력 가속도 센서 모듈 외	22,000,000	
2/2	2019-02-28	○○○	스마트방석 압력센서모듈	12,000,000	
	2019-03-05	○○○	스마트방석에어패키지	13,800,000	
합계				50,300,000	

관계부서 의견

해당과제의 관리부서(○○○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해당 집행내역을 불인정, 환수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단장(○○○팀장)은

○○○가 사업비 요령에 맞지 않게 사용한 사업비 집행액 84,500,000원의 정부출연금 지분[14] 70,590,469원을 환수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14) (단위 : 원)

구분	정부출연금	민간현금	정부출연금 비율(%)	부적정 집행액	환수대상액
2단계 1차년도	176,000,000	34,680,000	83.54%	58,700,000	49,037,403
2단계 2차년도	176,000,000	34,680,000	83.54%	25,800,000	21,553,066
합계				84,500,000	70,590,469

일련번호	14	감사자	○○○	공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23,290,655원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단 (○○○팀)	처분요구일	2019.5.	회신 기한일	2019.7.

시정요구

제　　목　○○○사업의 사업비 집행 부적정

소 관 부 서　○○○팀

조 치 부 서　○○○팀

내　　용

1. 업무 개요

평가관리원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에 따라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사업의 평가 및 관리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이하 '사업비요령'이라 한다)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이하 '평가관리지침'이라 한다.)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한편, ‘○○○사업’의 평가 및 관리는 ○○○팀에서 담당하고 있다.

2. ○○○사업의 사업비 집행 부적정

가. 관련 법령 및 판단기준

사업비요령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비는 과제수행과 관련 있는 용도로 해당 연도 수행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 제17조 제5항 및 [별표 4]에 의하면 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집행금액은 불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평가관리원은 ‘○○○사업’인 ‘○○○ 개발(개발기간 : 2018.4.1 ~ 2021.12.31., 정부출연금 : 2,210백만원)’의 전담기관이며, 참여기관인 ○○○(참여기관 정부출연금 : 494백만원)은 전담기관과 체결한 협약서와 공통운영요령 및 사업비요령상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는 아래와 같이 상기과제의 1차년도와 2차년도에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업비를 집행한 바가 있다.

[표 1]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용도로 집행한 사업비 내역

(단위 : 원)

연차	사용일자	거래처	내역	집행금액	비고
1	2018-08-31	○○○	IOT 게이트웨이 연동 모듈 외 2종	8,800,000	
	2018-12-04	○○○	개선형 가속도 및 모션감지 센서 모듈	6,400,000	
2	2019-02-19	○○○	소변측정디바이스전원부보드	2,400,000	
	2019-03-07	○○○	수액측정 디바이스 제어모듈	8,800,000	
합계				26,400,000	

관계부서 의견

해당과제의 관리부서(○○○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해당 집행내역을 불인정, 환수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단장(○○○팀장)은

○○○가 사업비 요령에 맞지 않게 사용한 사업비 집행액 26,400,000원의 정부출연금 지분[15] 23,290,655원을 환수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15) (단위 : 원)

구분	정부출연금	민간현금	정부출연금 비율(%)	부적정 집행액	환수대상액
1차년도	92,000,000	12,280,000	88.22%	15,200,000	13,410,050
2차년도	133,000,000	17,760,000	88.22%	11,200,000	9,880,605
합계				26,400,000	23,290,655

일련번호	15	감사자	○○○	공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25,053,345원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단 (○○○팀)	처분요구일	2019.5.	회신 기한일	2019.7.

시정요구

제　　목　○○○사업의 사업비 집행 부적정

소 관 부 서　○○○팀

조 치 부 서　○○○팀

내　　용

1. 업무 개요

평가관리원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에 따라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사업의 평가 및 관리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이하 '사업비요령'이라 한다)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이하 '평가관리지침'이라 한다.)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한편, ‘○○○사업’의 평가 및 관리는 ○○○팀에서 담당하고 있다.

2. ○○○사업의 사업비 집행 부적정

가. 관련 법령 및 판단기준

사업비요령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비는 과제수행과 관련 있는 용도로 해당 연도 수행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 제17조 제5항 및 [별표 4]에 의하면 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집행금액은 불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평가관리원은 ‘○○○사업’인 ‘○○○ 개발(개발기간 : 2018.4.1 ~ 2021.12.31., 정부출연금 : 2,210백만원)’의 전담기관이며, 참여기관인 ○○○(참여기관 정부출연금 : 417백만원)은 전담기관과 체결한 협약서와 공통운영요령 및 사업비요령상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는 아래와 같이 상기과제의 1차년도와 2차년도에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업비를 집행한 바가 있다.

[표 2]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용도로 집행한 사업비 내역

(단위 : 원)

연차	사용일자	거래처	내역	집행금액	비고
1	2018-10-05	○○○	영상처리제어모듈외3건	6,200,000	
	2018-10-30	○○○	개선형로봇제어CPU모듈	8,000,000	
	2018-11-02	○○○	개선형로봇제어멀티캐리어보드	7,000,000	
2	2019-02-13	○○○	3축옴니휠구동제어보드	4,800,000	
	2019-03-07	○○○	거리/장애물감지센서모듈	2,400,000	
합계				28,400,000	

관계부서 의견

해당과제의 관리부서(○○○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해당 집행내역을 불인정, 환수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단장(○○○팀장)은

○○○가 사업비 요령에 맞지 않게 사용한 사업비 집행액 28,400,000원의 정부출연금 지분[16] 25,053,345원을 환수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16) (단위 : 원)

구분	정부출연금	민간현금	정부출연금 비율(%)	부적정 집행액	환수대상액
1차년도	92,000,000	12,280,000	88.22%	21,200,000	18,703,491
2차년도	121,000,000	16,200,000	88.19%	7,200,000	6,349,854
합계				28,400,000	25,053,345

[별첨] 점검대상 과제 세부 내역

연번	(과제번호)과제명	점검대상 기관	참여 역할	참여 기간	대상 기관 사업비(백만원)				현장 점검
					정부 출연금	민간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1	(100○○○○○○)○○○○ 개발-⑪	○○○	참여	'16.05 ~ '20.04	1,740	235	346	2,321	부
2	(100○○○○○○)○○○○ 개발-⑪	○○○	주관	'17.04 ~ '21.12	2,925	390	585	3,900	부
3	(100○○○○○○)○○○○ 개발-⑪	○○○	참여	'17.12 ~ '19.12	114	26	39	179	부
4	(100○○○○○○)○○○○ 개발-⑪	○○○	참여	'18.09 ~ '21.08	200	40	60	300	부
5	(100○○○○○○)○○○○ 개발-⑪	○○○	주관	'16.05 ~ '18.10	1,130	678	452	2,260	부
6	(100○○○○○○)○○○○ 개발-⑪	○○○	주관	'17.04 ~ '19.12	1,210	605	605	2,420	부
7	(100○○○○○○)○○○○ 개발-⑪	○○○	참여	'17.04 ~ '21.12	262	85	56	403	부
8	(100○○○○○○)○○○○ 개발-⑪	○○○	주관	'16.08 ~ '19.07	735	238	158	1,131	부
9	(100○○○○○○)○○○○ 개발-⑪	○○○	참여	'18.04 ~ '20.12	375	74	112	561	부
10	(100○○○○○○)○○○○ 개발-⑪	○○○	참여	'17.07 ~ '21.12	578	123	180	881	부
11	(100○○○○○○)○○○○ 개발-⑪	○○○	주관	'18.04 ~ '19.12	350	-	-	350	부
12	(100○○○○○○)○○○○ 개발-⑪	○○○	주관	'18.04	1,070	211	316	1,597	부

연번	(과제번호)과제명	점검대상기관	참여역할	참여기간	대상 기관 사업비(백만원)				현장점검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 '20.12					
13	(100○○○○○○)○○○○ 개발-⑪	○○○	주관	'16.07 ~ '19.06	1,483	486	321	2,290	부
14	(100○○○○○○)○○○○ 개발-⑪	○○○	참여	'17.07 ~ '19.12	436	89	133	658	부
15	(100○○○○○○)○○○○ 개발-⑪	○○○	주관	'17.04 ~ '19.12	1,440	284	426	2,150	부
16	(100○○○○○○)○○○○ 개발-⑪	○○○	주관	'17.07 ~ '19.12	1,076	199	298	1,573	부
17	(100○○○○○○)○○○○ 개발-⑪	○○○	참여	'17.04 ~ '21.12	795	106	159	1,060	부
18	(100○○○○○○)○○○○ 개발-⑪	○○○	참여	'18.07 ~ '20.12	20	4	6	30	부
19	(100○○○○○○)○○○○ 개발-⑪	○○○	참여	'16.05 ~ '19.04	630	86	127	843	부
20	(100○○○○○○)○○○○ 개발-⑪	○○○	주관	'17.12 ~ '20.11	831	164	246	1,241	부
21	(100○○○○○○)○○○○ 개발-⑪	○○○	참여	'17.12 ~ '20.01	283	-	139	422	부
22	(100○○○○○○)○○○○ 개발-⑪	○○○	주관	'16.05 ~ '21.04	2,355	835	556	3,746	부
23	(100○○○○○○)○○○○ 개발-⑪	○○○	참여	'17.12 ~ '20.11	630	124	186	940	부

연번	(과제번호)과제명	점검대상기관	참여역할	참여기간	대상 기관 사업비(백만원)				현장점검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24	(100○○○○○)○○○○ 개발-⑪	○○○	주관	'17.10 ~ '20.03	920	165	248	1,333	부
25	(100○○○○○)○○○○ 개발-⑪	○○○	주관	'18.04 ~ '22.12	850	277	183	1,310	부
26	(100○○○○○)○○○○ 개발-⑪	○○○	참여	'18.07 ~ '20.12	35	-	-	35	부
27	(100○○○○○)○○○○ 개발-⑪	○○○	주관	'17.04 ~ '20.12	70	-	-	70	부
28	(100○○○○○)○○○○ 개발-⑪	○○○	참여	'16.10 ~ '19.03	460	149	99	708	부
29	(100○○○○○)○○○○ 개발-⑪	○○○	주관	'16.05 ~ '21.04	1,560	936	624	3,120	부
30	(100○○○○○)○○○○ 개발-⑪	○○○	참여	'17.07 ~ '19.12	300	150	150	600	부
31	(100○○○○○)○○○○ 개발-⑪	○○○	주관	'16.10 ~ '20.09	980	357	236	1,573	부
32	(100○○○○○)○○○○ 개발-⑪	○○○	참여	'18.06 ~ '21.12	5	-	9	14	부
33	(100○○○○○)○○○○ 개발-⑪	○○○	주관	'16.07 ~ '19.06	1,228	398	265	1,891	부
34	(100○○○○○)○○○○ 개발-⑪	○○○	주관	'18.04 ~ '21.12	1,126	208	309	1,643	부
35	(100○○○○○)○○○○ 개발-⑪	○○○	주관	'16.05 ~ '19.04	2,343	792	514	3,649	부

연번	(과제번호)과제명	점검대상기관	참여역할	참여기간	대상 기관 사업비(백만원)				현장점검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36	(100○○○○○)○○○○ 개발-⑪	○○○	참여	'17.12 ~ '20.11	503	99	149	751	부
37	(100○○○○○)○○○○ 개발-⑪	○○○	주관	'17.10 ~ '20.12	967	197	288	1,452	부
38	(100○○○○○)○○○○ 개발-⑪	○○○	참여	'17.10 ~ '20.03	217	44	56	317	부
39	(100○○○○○)○○○○ 개발-⑪	○○○	참여	'18.07 ~ '20.12	30	-	-	30	부
40	(100○○○○○)○○○○ 개발-⑪	○○○	참여	'18.04 ~ '20.12	400	194	185	779	부
41	(100○○○○○)○○○○ 개발-⑪	○○○	참여	'18.04 ~ '21.12	266	-	-	266	부
42	(100○○○○○)○○○○ 개발-⑪	○○○	참여	'18.05 ~ '19.12	170	34	50	254	**여**
43	(100○○○○○)○○○○ 개발-⑪	○○○	참여	'18.04 ~ '21.12	248	51	77	376	**여**
44	(100○○○○○)○○○○ 개발-⑪	○○○	주관	'17.07 ~ '21.12	1,368	292	419	2,079	부
45	(100○○○○○)○○○○ 개발-⑪	○○○	참여	'18.04 ~ '21.12	336	66	99	501	부
46	(100○○○○○)○○○○ 개발-⑪	○○○	주관	'16.10 ~ '19.09	1,187	384	256	1,827	부
47	(100○○○○○)○○○○ 개발-⑪	○○○	참여	'16.05 ~	802	111	165	1,078	부

연번	(과제번호)과제명	점검대상기관	참여역할	참여기간	대상 기관 사업비(백만원)				현장점검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19.04					
48	(100○○○○○)○○○○ 개발-⑪	○○○	참여	'17.12 ~ '19.12	190	37	56	283	부
49	(100○○○○○)○○○○ 개발-⑪	○○○	참여	'18.04 ~ '21.12	373	77	115	565	부
50	(100○○○○○)○○○○ 개발-⑪	○○○	참여	'16.12 ~ '19.11	30	10	6	46	부
51	(100○○○○○)○○○○ 개발-⑪	○○○	주관	'17.12 ~ '19.12	550	112	167	829	**여**
52	(100○○○○○)○○○○ 개발-⑪	○○○	참여	'18.04 ~ '22.12	383	125	82	590	**여**
53	(100○○○○○)○○○○ 개발-⑪	○○○	참여	'16.06 ~ '21.06	42	-	163	205	부
54	(100○○○○○)○○○○ 개발-⑪	○○○	참여	'17.12 ~ '21.11	40	-	67	107	부
55	(100○○○○○)○○○○ 개발-⑪	○○○	참여	'18.04 ~ '21.12	40	-	63	103	부
56	(100○○○○○)○○○○ 개발-⑪	○○○	참여	'16.10 ~ '19.03	412	133	86	631	부
57	(100○○○○○)○○○○ 개발-⑪	○○○	주관	'17.04 ~ '21.12	423	141	87	651	부
58	(100○○○○○)○○○○ 개발-⑪	○○○	주관	'17.10 ~ '20.03	397	69	104	570	**여**
59	(100○○○○○)○○○○ 개발-⑪	○○○	참여	'18.04 ~	494	66	99	659	**여**

연번	(과제번호)과제명	점검대상기관	참여역할	참여기간	대상 기관 사업비(백만원)				현장점검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21.12					
60	(100○○○○○○)○○○○ 개발-⑪	○○○	주관	'16.12 ~ '18.11	660	213	142	1,015	**여**
61	(100○○○○○○)○○○○ 개발-⑪	○○○	주관	'16.10 ~ '19.03	700	208	139	1,047	**여**
62	(100○○○○○○)○○○○ 개발-⑪	○○○	참여	'17.12 ~ '20.11	252	50	74	376	부
63	(100○○○○○○)○○○○ 개발-⑪	○○○	주관	'17.12 ~ '20.01	860	173	256	1,289	부
64	(100○○○○○○)○○○○ 개발-⑪	○○○	참여	'17.04 ~ '19.12	900	177	266	1,343	부
65	(100○○○○○○)○○○○ 개발-⑪	○○○	참여	'17.12 ~ '19.12	400	81	122	603	**여**
66	(100○○○○○○)○○○○ 개발-⑪	○○○	주관	'18.04 ~ '22.12	468	152	100	720	**여**
67	(100○○○○○○)○○○○ 개발-⑪	○○○	주관	'18.07 ~ '20.12	100	-	-	100	**여**
68	(100○○○○○○)○○○○ 개발-⑪	○○○	주관	'17.10 ~ '20.03	391	72	108	571	부
69	(100○○○○○○)○○○○ 개발-⑪	○○○	주관	'17.12 ~ '18.11	160	-	53	213	부
70	(100○○○○○○)○○○○ 개발-⑪	○○○	참여	'18.07 ~ '20.12	25	-	14	39	부
71	(100○○○○○○)○○○○ 개발-⑪	○○○	참여	'17.04 ~	386	76	114	576	부

연번	(과제번호)과제명	점검대상기관	참여역할	참여기간	대상 기관 사업비(백만원)				현장점검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19.12					
72	(100○○○○○)○○○○ 개발-⑪	○○○	참여	'17.04 ~ '20.12	116	-	20	136	부
73	(100○○○○○)○○○○ 개발-⑪	○○○	참여	'18.09 ~ '21.05	470	93	139	702	부
74	(100○○○○○)○○○○ 개발-⑪	○○○	주관	'16.05 ~ '19.04	2,078	672	447	3,197	부
75	(100○○○○○)○○○○ 개발-⑪	○○○	주관	'17.10 ~ '20.12	755	150	223	1,128	부
76	(100○○○○○)○○○○ 개발-⑪	○○○	참여	'16.10 ~ '19.03	140	46	30	216	**여**
77	(100○○○○○)○○○○ 개발-⑪	○○○	참여	'17.07 ~ '20.12	1,080	156	225	1,461	**여**
78	(100○○○○○)○○○○ 개발-⑪	○○○	참여	'17.04 ~ '19.12	950	190	285	1,425	**여**
79	(100○○○○○)○○○○ 개발-⑪	○○○	참여	'17.04 ~ '19.12	69	-	-	69	부
80	(100○○○○○)○○○○ 개발-⑪	○○○	참여	'18.06 ~ '20.12	129	-	-	129	부
81	(100○○○○○)○○○○ 개발-⑪	○○○	참여	'16.10 ~ '19.03	260	69	45	374	부
82	(100○○○○○)○○○○ 개발-⑪	○○○	주관	'16.10 ~ '19.03	616	192	125	933	부
83	(100○○○○○)○○○○ 개발-⑪	○○○	주관	'17.04 ~ '19.12	273	-	30	303	부

연번	(과제번호)과제명	점검대상 기관	참여 역할	참여 기간	대상 기관 사업비(백만원)				현장 점검
					정부 출연금	민간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84	(100○○○○○)○○○○ 개발-⑪	○○○	주관	'17.12 ~ '21.11	420	-	57	477	부
85	(100○○○○○)○○○○ 개발-⑪	○○○	참여	'16.10 ~ '20.09	127	0	65	192	부
86	(100○○○○○)○○○○ 개발-⑪	○○○	참여	'17.06 ~ '20.12	470	93	139	702	부
87	(100○○○○○)○○○○ 개발-⑪	○○○	참여	'16.06 ~ '19.05	120	-	78	198	부
88	(100○○○○○)○○○○ 개발-⑪	○○○	참여	'17.04 ~ '20.12	113	-	34	147	부
89	(100○○○○○)○○○○ 개발-⑪	○○○	참여	'17.09 ~ '19.12	346	69	102	517	부
90	(100○○○○○)○○○○ 개발-⑪	○○○	참여	'17.04 ~ '20.12	627	85	128	840	부
91	(100○○○○○)○○○○ 개발-⑪	○○○	주관	'17.04 ~ '21.12	700	228	151	1,079	부
92	(100○○○○○)○○○○ 개발-⑪	○○○	주관	'17.12 ~ '19.12	760	150	225	1,135	부
93	(100○○○○○)○○○○ 개발-⑪	○○○	참여	'16.10 ~ '19.03	115	32	22	169	부
94	(100○○○○○)○○○○ 개발-⑪	○○○	참여	'17.10 ~ '20.03	50	8	12	70	부
95	(100○○○○○)○○○○ 개발-⑪	○○○	주관	'18.07 ~ '20.12	75	10	15	100	부

연번	(과제번호)과제명	점검대상기관	참여역할	참여기간	대상 기관 사업비(백만원)				현장점검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96	(100○○○○○)○○○○ 개발-⑪	○○○	주관	'16.10 ~ '19.03	480	155	103	738	부
97	(100○○○○○)○○○○ 개발-⑪	○○○	주관	'16.05 ~ '19.12	1,153	537	265	1,955	부
98	(100○○○○○)○○○○ 개발-⑪	○○○	주관	'17.09 ~ '19.12	327	164	164	655	부
99	(100○○○○○)○○○○ 개발-⑪	○○○	참여	'17.12 ~ '20.01	462	233	232	927	부
100	(100○○○○○)○○○○ 개발-⑪	○○○	주관	'17.04 ~ '19.12	1,179	589	589	2,357	부
101	(100○○○○○)○○○○ 개발-⑪	○○○	참여	'18.04 ~ '20.12	240	-	90	330	부
102	(100○○○○○)○○○○ 개발-⑪	○○○	주관	'17.04 ~ '18.03	142	48	26	216	**여**
합계					60,557	15,927	16,436	92,920	**15개**